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-4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3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기존 마포구에서 시행한 ‘출산축하금 사업’과 ‘가사서비스 사업’이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의 ‘첫만남 이용권 사업’과 2023년 ‘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’과 중복, 확대되어 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출산축하금, 가사서비스 관련 조항 삭제
- 나.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규정
- 다. 표창 대상자 구체화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4. 2. 29. ~ 3. 20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라 출산 및 양육 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,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출산 및 양육 지원”이란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,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·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.
2. “다자녀가정”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출산·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구민의 책무)** 모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은 출산과 양육을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, 기관 및 단체 등은 출산 및 양육 친화 환경 조성 과 인식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)** 구청장은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2.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)** 구청장은 구민의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임신·출산·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
2.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
3. 가사서비스 제공·홍보
4. 다자녀가정의 지원
5. 출산 및 양육 지원 관련 법령·제도의 홍보
6.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사무의 위탁)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,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홍보 및 교육) ① 구청장은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를 홍보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9조(표창) 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,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및 확산과 저출산 대책 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할 수 있다.

1.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
2. 가족친화 우수기업
3. 그 밖에 저출산 대책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

② 표창의 종류 및 절차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0조(중복 지원의 제한)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보건소 건강동행과 이혜경
연 락 처	02-315-9072